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51 호

2007년 4월 27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07-853호(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3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23호(시설공사 (긴급)입찰공고(논곡초교 생태숲 조성공사)) 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24호(시설공사 (긴급)입찰공고(서창초교 생태숲 조성공사)) 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25호(과징금부과 공시송달 공고(옥보선 외 3명)) 1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26호(공시송달 공고(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체납자)) 1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27호(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1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28호(미술장식품 심의결과 (논현2택지 신영지월) 공고) 1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29호(미술장식품 심의결과
(구월동 23 구월주공재건축 1단지) 공고) 1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30호(서창지구 주 진입로 경관녹지 조성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2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35호(남동구 폐기물관리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37호(대부업체 소재 확인 공시송달 공고) 3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41호(차량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 등록 예고) 3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43호(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 3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44호(협의보상을 위한 공시송달공고) 53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15호(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인천논현2지구 6블럭 한화꿈에그린아파트)) 55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16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비관리청) 지정 고시) 59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17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비관리청) 고시) 60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조 례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07년 4 월 27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윤 태 진

남동구 조례 제85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명칭과 구역)의 **【별표】** 중 논현동 및 고잔동의 관할구역 난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남동구	논현동	논현동 일원 (남촌동으로 편입된 논현동 472의8-11, 474의1, 481의3, 524의1-6, 525의1-4, 526의1-32, 526의42-45, 527의1-3, 548의1, 산94의1-2, 산94의4-5, 산94의10-11, 산95의2, 산96의1, 산97의3, 산102의1, 산103의13-14 제외, 도림동에서 편입된 도림동 626의9, 626의45-50, 627의28 포함 고잔동에서 편입된 고잔동 597의2-3, 597의6-25, 597의27-59, 597의61-63, 597의65, 598의8-10, 598의28-34, 599의1-6, 601의1, 606의3, 622, 산72의2, 산77의1-4, 산97-3, 산80의3 포함) 고잔동으로 편입된 383의25, 412의20, 21, 22, 23, 415의 57, 58 제외 고잔동에서 편입된 255-6 포함 남촌동에서 편입된 남촌동 551의1-4, 도림동에서 편입된 도림동 552의1-41, 산105의 1-21 포함 <u>고잔동에서 편입된 고잔동 81의1, 83의1-2, 83의4, 83의6, 84의1-4, 85의1-2, 85의4-6, 86의20-23, 87, 88의1-5, 89, 89의1-3, 90, 91의1, 92의7, 94의1-4, 94의8-14, 94의16-25, 95의1-2, 96, 97의1-10, 98, 99의1-2, 100의1-6, 101, 102, 103, 104, 105, 106, 106의1, 107, 108, 109, 110, 111, 112, 113의1-4, 114, 114의1-4, 115, 116, 117의1-3, 118의1-2, 119의1-8, 119의10-11, 119의13-21, 119의23-24, 119의26-28, 120의11, 121의6-10, 122, 123, 124의1, 127의4, 581의3-4, 586의11, 586의13-15, 586의26, 589, 590, 590의1-3 포함</u>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고잔동	고잔동 일원 (남촌동으로 편입된 고잔동 597의69-72제외) 논현동으로 편입된 고잔동 597의2-3, 597의6-25, 597의27-59, 597의61-63, 597-65, 598의8-10, 598의28-34, 599의1-6, 601의1, 602의1, 603의3, 622, 산72의2, 산77의1-4, 산79의3, 산80의3 제외) 논현동에서 편입된 383의25, 412의20, 21, 22, 23, 415의57, 58 포함 논현동으로 편입된 255-6 제외 <u>논현동으로 편입된 고잔동 81의1, 83의1-2, 83의4, 83의6, 84의1-4, 85의1-2, 85의4-6, 86의20-23, 87, 88의1-5, 89, 89의1-3, 90, 91의1, 92의7, 94의1-4, 94의8-14, 94의16-25, 95의1-2, 96, 97의1-10, 98, 99의1-2, 100의1-6, 101, 102, 103, 104, 105, 106, 106의1, 107, 108, 109, 110, 111, 112, 113의1-4, 114, 114의1-4, 115, 116, 117의1-3, 118의1-2, 119의1-8, 119의10-11, 119의13-21, 119의23-24, 119의26-28, 120의11, 121의6-10, 122, 123, 124의1, 127의4, 581의3-4, 586의11, 586의13-15, 586의26, 589, 590, 590의1-3 제외</u>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논현2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사업 시행 지역이 두개의 서로 다른 법정동(논현동, 고잔동)에 속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됨으로서 주민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고잔동 일부를 논현동 행정구역(법정동)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고잔동 81의1번지 외 149필지(160,389㎡)를 논현동으로 편입함.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23 호

시설공사 (긴급)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논곡초등학교 생태숲 조성공사
- 공사위치 : 남동구 논현동 563-5번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본공사 40일, 식생유지관리 140일)
- 공사개요
 - 식재공 : 이팝나무외 19종 2,143주
 - 시설공 : 연못 1개소, 목교2개소, 평의자 6개소, 경계석 설치등
 - 기 타 : 유지관리(관수/방제), 식재 지반조성등
- 설계금액 : ₩132,994,670(추청가액 120,904,250원 부가가치세 12,090,420원)
- 기초금액 : ₩132,994,670원(금일역삼천이백구십구만사천육백칠십원정)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년 04월 23일(월) 09:00~ 04월 30일(월)15: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7년 04월 30일(월) 16: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로 우리구의 전자계약 추진계획에 따라 전자계약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조정 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132,994,670)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7호, 2007. 01. 12)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2005년도말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부채비율 90.03% 유동비율 189.10%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 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도시정비조경팀(032-453-286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04월 2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24 호

시설공사 (긴급)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서창초등학교 생태숲 조성공사
- 공사위치 : 남동구 서창동 332번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본공사 40일간, 식생유지관리 140일)
- 공사개요
 - 식재공 : 느티나무외 12종 1,475주
 - 시설공 : 연못1개소, 목교 2개소, 플랜터 5개소, 황토포장외 2종 250㎡
 - 기 타 : 유지관리(관수/방제)
- 설계금액 : ₩136,418,000원(추정가액 124,016,360원 부가가치세 12,401,640원)
- 기초금액 : ₩136,418,000원(금일억삼천육백사십일만팔천원정)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년 04월 23일(월) 09:00~ 04월30일(월)13: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7년 04월 30일(월) 14: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로 우리구의 전자계약 추진계획에 따라 전자계약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조정 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136,418,000)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7호, 2007. 01. 12)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2005년도말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부채비율 90.03% 유동비율 189.10%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 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도시정비조경팀(032-453-286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04월 2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25 호

과징금부과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징금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및 수취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과징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송달대상자 : 옥본선 외 3명(불임 ‘공시송달대상자명단’ 참조)
2. 공시송달기간 : 2007. 4. 26 ~ 2007. 5. 10 (15일간)
3.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시내 시중은행 및 우체국
4.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0조 및 동 시행규칙 21조 2의2, 6동 시행규칙 30조(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5. 납부고지서를 남동구청 교통과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 바랍니다.
6. 아울러 과징금 처분에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1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대중교통팀 (☎453-2914)

붙임

- 공시 송달 대상자 명단 -

연번	성명	주 소	위반내용	처분 결과	비고
1	옥복선	인천 남동구 논현동 558번지 2호 304	차량외부 상호미표시	과징금5만원	인천84바1165
2	김창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291번지 6호 동아빌라 10/301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10만원	인천86사1735
3	김영신	인천 남동구 논현동 558번지 3호 201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10만원	인천94바1131
4	조현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15번지 18호 한마음씨티빌 4/402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10만원	인천81바1501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2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및 압류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제 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2. 대 상

성명	주 소	자 동 차 등록번호	위반일시 및 장소	체납액(원)	비고
(주)가자 여행사	인천 남구 주안동 1542번지 3	인천31루4899	2006.07.24. 인천광역시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0,000	
이귀연	인천 남구 주안동 18번지 60호 17/1 101호	27머3766	2006.11.01. 홈플러스간식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0,000	

3. 기 간 : 2007. 04. 23. ~ 05. 06. (14일간)

4. 내 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2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후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체납으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의거 자동차 압류조치 할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032-453-2522)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427 호

공 시 송 달

식품위생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7. 04. 23 ~ 05. 07

2. 공고사항

○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 당 사 자

업 종	신 번 호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식품자동 판매기	남도-88	(주)창원	황인석	680726-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617-5
식품자동 판매기	200-321	간석쌀도.소매	천철심	561007-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107-1
식품자동 판매기	간석3-2003-14	헤어아트	강경아	660911-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37-26
식품자동 판매기	간석2-98-59	송도청둥오리	송남규	551203-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130-1
식품자동 판매기	간석2-98-54	청진동영양탕	송창우	530301-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182-2
식품자동 판매기	구월3-2004-2	경인지방노동청경인 고용센터	김나영	850921-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1112
식품자동 판매기	구월3-2004-1	경인지방노동청	김나영	850921-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1113
식품자동 판매기	남도-62	제일엔지니어링 (2호)	신영주	531210-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617-3
식품자동 판매기	만수6-94-23	남동구청의회	박문식	491005-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1008
식품자동 판매기	만수2-34	고추기름집	안희자	570410-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80-131
식품자동 판매기	구월3-2003-10	술익는마을	남명순	551005-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1378-1
식품자동 판매기	남도-63	제일엔지니어링 (3호)	신영주	531210-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617-3
식품자동 판매기	간석3-2002-7	동아팍콘	강월수	361201-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78-18
식품자동 판매기	만수6-94-17	삼보주유소	이후식	671225-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984-3
식품자동 판매기	구월3-2004-8	영성할인마트	백승호	590205-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1381
식품자동 판매기	간석1-2001-5	태양김밥	박응선	460917-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467-8

업 종	신 고 번 호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식품자동 판매기	만수6-94-20	양영상가	이인식	541015-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1036-2
식품자동 판매기	간석3-2005-6	영마트	장은숙	600310-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76-4
식품자동 판매기	남도-87	진영스텐다드 (주)	황인석	680726-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615-1
식품자동 판매기	간석3-2003-25	궁중영양탕	신의순	520515-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113-4

○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58조 및 동법 제64조

○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1)

- 청문일시 : 2007. 05. 17(목) 11:00

- 청문장소 : 남동구청 환경위생과(6층) 사무실

- 청문주재자 :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3. 기 타 : 청문 불참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2007. 4.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28 호

미술장식품심의결과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2택지 9BL ‘신영지웰’의 미술장식품 심의결과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쇼 아

래 쇼

1. 심의일시 : 2007. 4. 19(목) 10:30
2. 심의장소 : 남동구청 4층 개나리홀
3. 심의결과

【논현동 논현2택지 9BL ‘신영지웰’】

위 치		논현동 논현2택지 9BL ‘신영 지웰’		
건 축 주		(주)신 영		
작품 번호	작 품 명	구 분	심의결과	비 고(조건 및 사유)
1	‘공간-조화’	조 각	조건부 가 결	- 조건사항 ①안전을 위해 바닥을 화강석 물갈기 마감 대신 잔다듬으로 변경

2007. 4. 2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29 호

미술장식품심의결과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3 ‘구월주공재건축 1단지’의 미술장식품 심의결과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쏠 아

래 쏠

1. 심의일시 : 2007. 4. 19(목) 10:30
2. 심의장소 : 남동구청 4층 개나리홀
3. 심의결과

【구월동 23 ‘구월주공재건축 1단지’】

위 치		구월동 23 ‘구월주공재건축 1단지’		
건 축 주		구월주공재건축조합		
작품 번호	작 품 명	구 분	심의결과	비 고(조건 및 사유)
2	‘나 무’	조 각	조건부가결	- 조건사항 ① 안전을 위해 기둥과 잎, 가지를 견고하게 접합하고, 골조트러스 구조 상세도면을 제출할 것 ② 중간의 달팽이 형태 돌을 좌우로 이동 배치 ③ 나무 잎의 색상을 도면대로 밝은 색으로 변경 설치
3	‘안(安)’	조 각	가 결	
4	‘플라잉’	조 각	조건부가결	- 조건사항 ① 작품 재질, 조인트 부분을 명시한 상세도면 제출
5	‘삼색의 비행’	조 각	조건부가결	- 조건사항 ① 화강석을 상주석으로 변경하고 규모를 확대할 것 ② 내부 골조 트러스 및 접합부분 표기한 상세도면 제출

【구월동 23 ‘구월주공재건축 1단지’】

위 치		구월동 23 ‘구월주공재건축 1단지’		
건 축 주		구월주공재건축조합		
작품 번호	작 품 명	구 분	심의결과	비 고(조건 및 사유)
6	‘순 환’	조 각	조건부가결	- 조건사항 ① 스테인리스 스틸 두께 등 상세도면 제출
7	‘야 외 음악회’	조 각	조건부가결	- 조건사항 ① 샅등 음표의 높이를 30cm 정도로 높여서 설치하고 좌대돌의 색깔에 변화를 주기위해 고 홍석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 ② 안전을 위해 바닥을 잔다듬으로 처리
8	‘3월의 향기’	조 각	조건부가결	- 조건사항 ① 모자이크 타일을 견고하게 접합할 것 ② 기둥을 도면의 밝은 색 계통으로 설치할 것 ③ 안전을 위해 바닥을 잔다듬으로 처리
9	‘변주된 사각’	조 각	조건부가결	- 조건사항 ① 사각형 돌의 두께를 명시한 상세도면 제출 ② 아이들이 앉을 수 있도록 판석의 높이를 높 여서 설치
10	‘평화의 소식’	조 각	조건부가결	- 조건사항 ① 좌대를 50~60cm정도로 낮추고 인물상을 2m 50cm정도로 확대 설치
11	‘지식의 서’	조 각	조건부가결	- 조건사항 ① 색상의 조화를 위해 좌대를 고훈석으로 설치 ② 조인트 부분을 확실히 접합하여 안전(견고성) 에 유의

2007. 4. 2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30 호

서창지구주진입로 경관녹지 조성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서창지구주진입로 경관녹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소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7. 4.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 명칭 : 서창지구 주진입로 경관녹지 조성공사
3. 사업의 위치 및 개요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296-5 번지일원(1,204㎡)
4. 보상시기 : 2007. 6월 예정
5.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6. 보상대상
 - 0 토지보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296-5번지 외 1개소 (1,204㎡)
 - 0 지 장 물 : 없 음.
7.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협의계약 체결후 현금보상(물건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사 1인을 선정할 수 있음.)

8.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개별 통지

9. 공고.열람기간 : 구보 게재 일로부터 14일간(게재일:2007.4.27)

10. 열람장소 : 남동구청도시계획과

11. 기타사항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도시계획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2. 토지조서 : “첨부서류”(종이문서)

세 부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서창지구 주민입로 경관녹지 조성공사												
소재지	지번	지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및 지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서창동	297-2	임야	구릉지	1,097.0	1,097.0	자연녹지 지역	충주평씨 종친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34	없	슴		회장:평귀환
서창동	296-5	전	도로	210	107	자전거 전용 도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남동구 만수동1008	없	슴		
합 계				1,307.0	1,204.0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43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규정(환경부예규)에 의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본문”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청소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453-2553), FAX(453-25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목적)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조례 제4조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로 한다.

같은 조례1호 중 “21:00부터 다음날 06:00”를 “20:00부터 다음날 06:00”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3항의 규정”으로 하고,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를 “주민의 편리와 주위 여건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같은 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의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인천광역시 O C R		인천광역시 O C R	
		수납의뢰서 (수납문물보관용)	
《납부자보관용》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과 목 고지번호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부 기 한	과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과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합 계 금 액			
총 액 납부액			
납부자:		납부자:	
전 회:		전 회:	
의의 금액을 일수합니다.		의의 금액을 수납하고 증서가 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의 일수증은 보자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의 일수증은 보자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납부금에 대해 고지번호 및 연도 12월말까지 납부하고, 차액고지 고지번호 및 연도증		*납부금에 대해 고지번호 및 연도 12월말까지 납부하고, 차액고지 고지번호 및 연도증	
인천광역시 O C R		인천광역시 O C R	
		《구청보관용》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과 목 고지번호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부 기 한	과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과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합 계 금 액			
납부자:		부과부서:	
전 회:		문서번호:	
의의 금액을 일수합니다.		의 금액을 일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수납인	
귀하			

[별표 1]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단위: 만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2조)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2) 적정처리·보관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3) 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500
(4)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 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5)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300	500	700
(6) 폐기물을 흘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300	500	700
(7)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8) 기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9) 폐기물수집·운반 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200	300	5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우)
(10) 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300	500	700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가) 1일 이상 1월 미만 경과 시	200	400	600
(나)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과 시	400	600	800
(다) 3월 이상 경과 시	1,000	1,000	1,000
(2) 폐기물을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4)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00	200	300
(5)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	200	300
(6)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300	500	700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500	700	1,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 후)
(2)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400	600	800
(3)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 재활용신고 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	600	800
(나)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제6호다목(2)(나)④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4) 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1의2.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 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법 제26조제8항)	500	700	1,000
2.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 (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제외))	100	100	100
3.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 (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3의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 (법 제42조의2제3항)	100	100	100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8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 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 하는 경우			
(1)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 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500	700	1,000
(3) 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00	700	1,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4)(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300	500	700
(5)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 내에 사후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 위탁하는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700	1,000	1,000
마.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 보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 3일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나) 3일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150톤(100m³)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나) 150톤(100m³)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3) 보관 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바. 수집·운반 및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을 받는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사.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 이내 처리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아.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00	500	1,000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			
· 관리하였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가.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	200	500	1,000
(2)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아니 하는 경우	200	500	1,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3) 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4)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300	500	1,000
나. 가목 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 관리하는 경우	300	500	1,000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아니 하는 경우	700	1,000	1,000
(2)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복토하는 경우	400	600	1,000
(3) 기타 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유지 · 관리하는 경우	500	700	1,000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	1,000	1,000
(2)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아니 하는 경우	300	500	1,000
마.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00	1,000	1,000
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 자 (법 제39조제1항)	300	500	1,000
7.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			
가.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 (법 제43조의2제3항제1호)	1,000	1,000	1,000
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 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제7항)	300	300	300
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 예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제8항)	1,000	1,000	1,000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가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의2제9항)	100	100	100
마.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의2제10항)	100	100	1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7의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 한 자 (법 제24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7의3.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 하지 아니한 자(법 제24조제4항)	100	200	300
7의4.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법 제25조제2항)	100	200	300
7의5.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 인계서에 갈음하는 전산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 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법 제44조제2항)	10	20	50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50	100	1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	100	200	300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 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운반자(법 제25조의2제3항)	300	300	300
11.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처리한 자(법 제25조의2제4항)	100	200	300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	300	300	300
13. 휴업·폐업 또는 재 개업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 자(법 제42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14. 폐기물의 수집 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	3	3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15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15	2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일반 폐기물 50kg 이하	20	30	50
(2) 일반 폐기물 51kg 이상	50	50	50
(3) 폐 목재 및 가구류	30	40	50
(4) 농산물 도매시장 내 무단투기 20kg 미만	30	40	50
(5) 농산물 도매시장 내 무단투기 20kg 이상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채류 등)을 버리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 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를 제외한다)			
(1) 무단투기 한 폐기물을 즉시 처리 하는 경우	50	70	100
(2) 무단투기 한 폐기물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100	100	100
15.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조제3항, 조례 제6조의2,3,4)	30	70	100
16.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조례 제4조 · 제6조)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 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사업 활동과 관 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 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17. 감시전문기관에 감시 위탁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 의5제1항)	100	100	100
1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4항)	100	100	1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19.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	40	50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30	40	50
20. 폐기물 관리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제1항)	100	100	100
21.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제1항)	50	100	100
22.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제1항)	100	100	100
23.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제1항)	100	100	100

신구 조문 대비 표

연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 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인천 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방법의 세분류) <u>조례 제4조의</u>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생활폐기물은 일반봉투에 담아야 하며, 분리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분리보관 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환경미화를 위하여 그날 <u>21:00부터</u> <u>다음날 06:00</u> 사이에 본인의 출입문 앞에 배출하여야 하고, 수거업체의 휴무일에는 배출할 수 없다. 2.(생략)	제2조(배출방법의 세분류) 인천광역시 남동 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 조의 -----. 1.----- ----- -----20:00부터 다음날06:00----- ----- -----.
제3조(판매소지정)① (생략)	제3조(판매소지정)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신청을 받 을 때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 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민의 편리와 주위여건을 고려하여 별 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 표

연 행	개 정 안
제4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u>다음 각호의 1</u>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4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 <u>다음</u> <u>각호의 사항</u>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u>인천광역시사무위</u> <u>임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63</u> <u>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u> <u>서는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u> <u>한 규정 별표2를 준용한다.</u> ②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 여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등)① 조례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 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u>신고대상 쓰레기는 생활폐기물에 한하며 과</u> <u>태료 부과금액이 5만원인 휴지,담배꽂초,전</u> <u>단지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u> 2. ~ 5. (생략)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 <u>폐기물관법</u> 」 <u>제63조 및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u> <u>부과금액은 [별표1]과 같이 한다.</u> ② <u>삭제</u>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① ----- ----- ----- 1. <u>삭제</u> 2. ~ 5.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3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 등)제1항 규정에 의거 대부업체에 대한 확인 점검 결과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대부업자에 대한 소재 확인을 위해 동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4.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 4. 26 ~ 5. 25(30일간)
2. 공고근거 :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 송달 공고
3. 송달대상 : 불임 소재확인 대부업체 명단
4. 송달내용

대부업 등록업자는 본 공고 기간 만료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대부업의 등록이 제한됩니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변경등록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1조(과태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지역경제과(☎ 032-453-26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부업체 소재확인 명단 1부. 끝.

대부업체 소재확인 명단

일련 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개 지	비고
1	인천-248	뱅크라인	남준규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9-3 관석빌딩 201호	
2	인천-648	플러스론	김유리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29-17,18 노빌리안 2차 1007호	
3	남동-41	하나 (HANA CREDIT)	염성환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29-22 노빌리안 명품 309호	
4	남동-54	FINE CAPITAL	추연택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222-16 세정빌딩 101호	
5	남동-60	씨티크레디트	홍준표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29-19 이노프라자텔 601호	
6	남동-100	원 흥	성순철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29-27 노빌리안 2차 605호	
7	남동06-2	O.K	정진환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449-3 한발프라자 403호	
8	인천-60	성진크레디트	조현덕	인천 남동구 간석4동 390-3	
9	인천-80	(주)성도기업	이연옥	인천 남동구 간석3동 770-8	
10	남동-33	한나금융컨설팅	박경균	인천 남동구 간석1동 320-9 3층	
11	남동-20	대 산	김현철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6-24	
12	남동-26	대 광	김태철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6-6 범양상가 205호	
13	남동-56	텔 라 인	이은희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33-12 한빛빌딩 303호	
14	남동06-27	누 리	이영진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33-12 한빛빌딩 604호	
15	남동-101	성은기획	문탁현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6-79 성은빌딩 4층	
16	남동4-1	베스트론	조원상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220-1 기성빌딩 210호	
17	인천-454	대 신	정경화	인천 남동구 간석3동 88-4	
18	남동-35	론메이저	권영희	인천 남동구 간석1동 313-3 형진프라자 321호	
19	남동-28	대 성	정우연	인천 남동구 간석4동 231-1	
20	남동06-30	세영상사	손형식	인천 남동구 간석동 390-11	
21	인천-376	상탑기업	정경호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7 남동공단 116BL 1LT	
22	남동-17	삼성테크	주영미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1-1 남동공단 65BL 2LT	
23	남동06-55	대 명	김연태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7-17 2층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41 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7. 5. 10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7. 4. 26 ~ 2007. 5. 10(15일간)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35나 4210	조홍복	서구 가좌동310-8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사건2001카단4040)	배현기	동구 송림동64-4
인천34가 8491	윤인수	계양구 병방동 163-1 세보빌라나동 401호	서울지방법원 (사건98카단61431)	신승환	서구 가정동561-3 성진빌라 1/B01
인천34가 8491	윤인수	계양구 병방동 163-1 세보빌라나동 401호	서울지방법원 (사건97카단118565)	김현권	동작구 상도동375-5
인천30나 8642	김명기	남동구 만수동46 주공(아) 315/50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사건97카단1415)	권인창	부천시원미구중동5-2 BL은하(아)528/304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2941)

2007. 4.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43 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52호, 2006.12.15)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월 4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공고기간 : 2007. 4. 27 ~ 2007. 5. 7(11일간:공휴일포함)

2.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구광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구광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창환 다. 설 계 자 : (주)화인씨엠건축사사무소 배홍렬 라. 시 공 사 : 삼익산업개발(주) 마.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9-22외 1필지 ○ 대지면적 : 2,692.2㎡ ○ 규 모 : 지하2층/지상9~13층, 1개동, 69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 연 면 적 : 9,860.82㎡ ○ 사업기간 : 2007. 5. 20 ~ 2008. 6. 30. ○ 사업계획승인일 : 2004. 5. 7 바. 사 업 비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 14,920,000 ○ 대 지 비 : 3,500,000 ○ 총공사비 : 10,506,400 - 감리대상공사비 : 9,594,073(부가가치세별도) - 타법감리공사비 : 912,327 ※ 감리예비기준 : 278,803,761원(총공사비의 2.906%) - 감리최고예비가격 : 278,803,761원 - 감리최저예비가격 : 262,075,535원 사.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별첨참조)	아. 복수예비가격 ①278,803,761원 ②277,607,692원 ③276,411,624원 ④275,215,556원 ⑤274,019,488원 ⑥272,823,420원 ⑦271,627,352원 ⑧270,439,648원 ⑨269,243,580원 ⑩268,047,511원 ⑪266,851,443원 ⑫265,655,375원 ⑬264,459,307원 ⑭263,263,239원 ⑮262,075,535원 ※ 상기 금액은 부가 가치세 제외 금액임
---	--

3. 감리자 등의 자격

- ① 감리자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단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 ② 감리원 :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52, 2006.12.15)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
 -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 :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
 - ※ 감리자(원)의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 :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

4. 지정방법

- ① 평가기준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52)
- ② 적격심사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8조에 의함
- ③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기타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함

5. 응모서류

-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감리자(원)에 대한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③ 감리비입찰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별도 이중 봉투에 봉인 후 봉투 접합부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표지에 감리비입찰서, 응모번호, 사업주체, 상호, 감리자 명기)
- ④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 ⑤ 감리원배치계획서 및 감리업무수행계획서
- ⑥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⑦ 서약서 1부(별지 제6호서식)

⑧ 건축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원

※ 추가제출서류(평가결과에 따라 감리자 지정권자가 요청시 2007.5.15.한 제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52호)에 의거 별표 제1호 서식 뒷면의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적격심사후 낙찰이 가능한 상위 5개사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하며, 만일 증빙서류를 통보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리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함)

* 제출 서류 중 자격증 사본·학력증명서·재무상태검토보고서·행정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감리업무수행실적 사본·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교육 훈련증명서 사본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기타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름.)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업체간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7. 재무상태평가 :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 및 자기 자본비율

- ① 평균 유동비율 : 253.69%
- ② 평균 자기자본비율 : 60.17%

8. 용모서류 접수기간

① 일 시 : 2007. 05. 08(화) 09:00부터 11:30까지 접수

②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층 건축과(도시개선팀)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상근근무 시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③ 유의사항

- 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등의 추첨(입찰서 개봉 포함)일시 및 장소

연 번	사 업 주 체 (세대수)	예정가격 추첨⇒가격 입찰서 개봉		
		년 · 월 · 일	시 간	장 소
1	구 광명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 (69세대)	2007.05.08 (화)	14:00부터	남동구청(7층 소강당)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① 예정가격의 추첨시에는 감리자지정 신청을 한 감리자(또는 위임을 받은자)가 참석하여 예정가격을 추첨한 4개의 평균 가격으로 하며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 함.
- ②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추첨일에는 추첨 10분전까지 감리자 지정신청자(대표) 또는 위임장 제출한 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됨.

10. 열람 및 이의신청

- ① 기 간 : 2007.05.10 ~ 2007.05.16(5일간)
- ② 방 법 :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감리자지정 신청자가 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③ 열람 및 이의 신청 할수 있는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 자기 평가표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 신청 불가

11. 낙찰자 결정방법

- 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 - 552(2006. 12. 15)호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

12. 기타 유의사항

- 가.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나. 신규 감리원(배치할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 감리원은 전 공정에 배치하여야 함. 다. 비상주 감리원은 1인에 한함.
- 라. 인·월수 산정시 비상주 분은 전체 인·월수의 15% 이내 이어야 함.
- 마. 감리원 교육 가산 점수는 공고일 이전 것만 인정 함.
-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만 입찰서 개봉 및 예정가 추첨 후 참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류 반환(당일에 한함)
- 사. 응모서류 접수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음
- 아. 자기평가 기재내용과 첨부서류 미비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은 우리 구가 임의평가하며, 주상복합건물은 주택건설공사로 인정함

자. 입찰금액이 아라비아 숫자금액과 한글표기 금액이 다른 감리입찰서 및 인감누락 입찰서는 무효처리 함.

차. 자기평가서상에 자체평가 내용이 사실보다 낮게된 경우 상향조정하지 않으며, 사실보다 높게 평가하여 기재한 경우 사실대로 조정 평가함.

카. 공고문 및 감리자지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정권자 결정에 따름.

타. 감리자지정 중·후 사업계획변경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 등에 의거 당사자간 정산하여야 함.

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경미한 변경시 감리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발생시에는 지정당시의 예정가격요율 또는 낙찰율 등에 의거 당사자간 정산하여야 함

하. 분야별 공사기간 이외에 감리원(평가, 비평가)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계획 부적정으로 감점 처리함. 다만, 감리대가 기준 인·월수를 초과하여 배치(감리회사가 인건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거.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는 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너. 지역가점은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는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더.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2) 모집공고 기준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도 포함)
- 6)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기타 의문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 도시개선팀(☎032-453-28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2. 공정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별첨). 끝.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구광명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최창환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9-22외1		대지면적	2,692.2㎡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9~13층, 1동, 69세대	9,860.82㎡	2007.05.	2007.6.30	
설 계 자	성 명	배홍렬	상 호	(주)화인씨엠건축사사무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82-13 천우빌딩 2층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주택건설공사감리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입찰자(대표자)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5순위업체 해당)						

(뒷 면)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 회 사 ~	①재무상태 건 실 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및 정보화 투자실적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
	⑦업 무 중 첩 도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도(배치예정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1.1.1.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1.1.1.1.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 리 원	⑫자 격 증 증 명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 력 증 명 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 력 증 명 서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 인 서	최근 2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양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예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재정상태 건 실 도		유동비율	5			예) 00(%)
			자본비율	4			예) 00(%)
	감리업무수행실적(연면적)			15			예) 100.00(㎡)
	행정제재			10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실적	1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1.5			예) 00(%)	
	투자실적	교육훈련	0.5			예) 2주교육 0명, 1주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5			예) 건축 0명의 0명
	교체빈도			5			예) 00(%)
	감리업무수행계획서			3			예) 적정
	가점	감리업무수행결과 가점		(1)			예) 00(점)
		지역가점		(2)			예) 00도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50			
적격 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 <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구비서류 : 감리원배치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감 리 비 입 찰 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구광명연립재건축정비사업			
	금 액	금	원정(₩)		
입 찰 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g/m²)

[별지 제4호서식]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구 분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 영 비 율 (%)	산출근거(단위: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최근년도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
 른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
 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
 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g/m²)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 표 자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대 지 면 적	m ²	
	사 업 내 용	공 사 명	○○공사		사업승인일	20 년 월 일
		규 모	층, 동, 세대		착공(예정)일	20 년 월 일
		연 면 적	m ²		준공(예정)일	20 년 월 일
		사업승인번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공동도급 비 율	(%)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년 월 일)부터 3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3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사유로 인하여 현재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중지 되고 있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인)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사 업 명 :

☐ 신 청 인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감리공고문을 숙지하였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감리자 교체, 벌점부여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7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 공사명 : 구광명연립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단위:천원)	
구 분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총공사비	순공사비	토목공사	1,344,819	1,344,819	-	-
		건축공사	5,295,225	5,295,225	-	-
		기계설비공사	766,967	766,967	-	-
		전기공사	472,788	-	-	472,788
		정보통신공사	168,100	-	-	168,100
		소방설비공사	63,030	-	-	63,030
	소 계		8,110,929	7,407,011	-	703,918
	일반관리비		1,376,338	1,256,597	0	119,741
	이 윤		1,019,133	930,465	0	88,668
	소 계		10,506,400	9,594,073	-	912,327
간접비	설 계 비		175,760	-	175,760	-
	감 리 비		144,000	-	144,000	-
	일반분양시설 경비		345,000	-	345,000	-
	분담금 및 부담금		-	-	-	-
	보 상 비		-	-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176,168	-	176,168	-
	소 계		840,928	-	840,928	-
대 지 비			3,500,000	-	3,500,000	-
부가가치세액			72,672	-	72,672	-
총사업비 계			14,920,000	9,594,073	4,413,600	912,327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444 호

협의보상을 위한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1-45호(2001.10.8)호로 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 된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도로(중1-180호선) 하단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중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불명등으로 인하여 협의할 수 없는 토지등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보상장소로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04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종류 :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3. 사업예정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번지 일원
4. 공고기간 : 14일간
5. 보상계획
 - 가. 협의기간 : 2007. 3. 7 ~ 2007. 5. 16
 -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다. 보상금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시행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 라. 보상장소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별관(보상업무 위탁시행)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2-19 신한데뷰 2층
전화번호 : 032-450-8125
 - 마. 보상금액 및 계약시 구비서류 : 보상장소로 문의

6. 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 #1

토지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분	소유자	주소	관계인
1	남동구 만수동	산 15-4	임	298	298 /298	길영희	인천시 중구 신흥동 2가 16	-
2	남동구 만수동	80-111	도	48	48 /48	이복례	인천시 남구 만수동 산8	-

고	시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07-15 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 1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4. 2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논현2지구 6블럭 한화꿈에그린아파트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주)한화건설 (대표자 : 김현중)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3-2 모비딕빌딩 8층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택지개발사업(2)지구 6블럭
- 연 면 적 : 203,470.738㎡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지상29층, 개동, 982세대 부대·복리시설
- 사 업 비 : 327,943,000천원
- 변경 내역
 - 발코니 확장(982세대중 330세대)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난방열교환기 및 열부하, 배관경 변경
- 환풍위치변경
- 정화조 배기덕트 위치변경
- 601, 604, 605, 606, 609동 계단실 창호를 연창으로 변경
- 기타 경미한 변경 등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05. 2. 28 ~ 2007. 12. 31

5.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453-27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사 업 구 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승인 ☒ 변경승인				
승 인 번 호	2004-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7호				
상 호	(주)한화건설	등 록 번 호	경기도-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89-207		
대 표 자	김 현 중	사업자등록번호	110111-2558405		
영업소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3-2 모비딕빌딩 8층				
대 지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택지 개발사업(2)지구 6블럭		대지면적(㎡)	67,791	
건축면적(㎡)	8,493.648		건 폐 율 (%)	12.529	
연 면 적(㎡)	203,470.738		용 적 륜 (%)	224.557	
동수(주/부)	13/9		세 대 수	982	
주 택 형 별	민간분양		총 사 업 비	327,943,000천원	
착 공 예 정 일	2005. 2. 28.		사용검사예정일	2007. 12. 31.	
동 고 유 번 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동 고 유 번 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1	601동	10,806.635	2	602동	9,837.967
3	603동	9,837.967	4	604동	5,796.97
5	605동	10,501.672	6	606동	8,254.768
7	607동	11,907.689	8	608동	11,907.689
9	609동	10,806.635	10	610동	13,625.591
11	611동	16,682.911	12	612동	16,682.911
13	613동	14,237.055	14	614동	1,036.3
15	615동	1,522.961	16	616동	709.597
17	617동	112.5	18	618동	35.94
19	619동	21.5	20	620동	47,324.503
21	621동	1,285.872	22	622동	535.105
변경사항	- 발코니 확장(982세대중 330세대)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난방열교환기, 배관경 등 변경 - 정화조 배기덕트 위치 변경 - 계단실 연창으로 변경 -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				
2007년 4월 23일 <b style="font-size: 1.2em;">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14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신자 : 인천광역시장

제 목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서

1. 사업계획 승인내역

구분	사업주체			사업위 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구분	유 형	규모	동 수	세 대 수	건축 연면적	대지 면적	사업비	사업승 인일	착공예 정일	준공예 정일
(주) 한 화 건 설	김 현 중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3-2 모비딕 빌딩 8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택지 개발사업 (2)지구 6블럭	주택 건설 (분양)	아 파 트	101.31㎡	13	208	203,470.7 38	67,791	327,94 3,000 천원	2004.1 2.29	2005.0 2.28	2007.1 2.31	
						119.951㎡		376							
						119.877㎡		198							
						126.926㎡		100							
						149.618㎡		100							

2.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발코니 확장(982세대중 330세대)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난방열교환기, 배관경 등 변경
- 정화조 배기덕트 위치 변경
- 계단실 연장으로 변경
-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

비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7 - 16 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비관리청) 지정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도시계획도로(중로2-24호선, 중로2-25호선, 소로3-16호선, 소로3-00호선 폭원 확장 및 신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86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비관리청) 지정 고시 합니다.

2007. 4. 2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4, 중로2-25, 소로3-16, 소로3-00)]
- (2) 명 칭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중로 2-24호선 : 폭원(B)=15~22.9m, 연장(L)=1,500m중 501m
- 중로 2-25호선 : 폭원(B)=15~24.1m, 연장(L)=2,550m중 911m
- 소로 3-16호선 : 폭원(B)=4m, 연장(L)=88.75m
- 소로 3-00호선 : 폭원(B)=5~12m, 연장(L)=123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 (2) 주 소 : 남동구 구월동 1241-17번지 3층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7. 4. ~ 2007. 8. 31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7 - 17 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비관리청)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도시계획도로(중로2-24호선, 중로2-25호선, 소로3-16호선, 소로3-00호선 폭원 확장 및 신설공사)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비관리청)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96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4. 2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4, 중로2-25, 소로3-16, 소로3-00)]
- (2) 명 칭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중로 2-24호선 : 폭원(B)=15~22.9m, 연장(L)=1,500m중 501m
- 중로 2-25호선 : 폭원(B)=15~24.1m, 연장(L)=2,550m중 911m
- 소로 3-16호선 : 폭원(B)=4m, 연장(L)=88.75m
- 소로 3-00호선 : 폭원(B)=5~12m, 연장(L)=123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 (2) 주 소 : 남동구 구월동 1241-17번지 3층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7. 4. ~ 2007. 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재생략)

8. 첨 부 : 관계도서(계재 생략)